

14 (第109回-第4次)

<p>1.집행기관의 정원 : 11,531명 2.본청·소방학교·소방서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4,593명 3.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332명 4.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23명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 계 : 16,679명”를 “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16,679명으로 총수를 정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.) : 11,531명 2.본청·소방학교·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4,593명 3.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332명 4.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23명”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○제3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의 규정)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설한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생각되고 ○부칙 제2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4조의 별표3(특별시·광역시 및 도의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정원표)의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정원이 7명에서 4명으로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3명에 대하여 제2조제1호에 증원하여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지며 ○부칙 제3조(한시정원)에서 집행기관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은 동 개정조례안 제2조(정원의 총수)를 개정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. 4.질의·답변 : 생략 5.수정안의 요지 가.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년 10월 20일, 정현균 의원 외 1인 나.수정이유 ○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이 '98.8.31자로 개정</p>	<p>공포됨에 따라 이에 의거 정원의 총수를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이나 관계 조문(제2조)의 체계에 있어 정원의 총수를 각 호 촉하단에 밑줄을 긋고 표기하여 구성상의 어색함이 있고 ○집행기관의 정원을 상기규정(대통령령)과 같이 명확히 하기 위함. 다.수정 주요골자 ○정원의 총수는 본문에서 정하고 각 호 촉하단에 밑줄을 긋고 표기한 총계는 삭제함.(안 제2조) ○집행기관의 정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“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”를 ()로 내서 함.(안 제2조) 6.심사결과 ○수정안 의결(제적의원 12명, 출석의원 9명 전원일치) 7.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89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98. 10. 기획경제위원회</p> <p>1.심사경과 가.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8년 10월 2일, 서울특별시장 나.회부일자 1998년 10월 2일 다.상정일자 제10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(1998년 10월 20일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 2.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타명오) 가.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 규제시책을 심의·조정하고 규제의 심사·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 나.주요골자 1)기능(안 제2조) 가)기존 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</p>	의안 번호	89
의안 번호	89		

<p>나) 규제의 신설·강화 등에 관한 사항 다) 규제의 등록·공표에 관한 사항 라)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·평가에 관한 사항</p> <p>2) 위원회 구성(안 제3조)</p> <p>가) 위원장 2인(행정1부시장, 위원중 시장이 위촉한 자) 포함 12인이내 나) 위원 :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우리 시 3급이상 공무원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</p> <p>3. 실무위원회(안 제5조)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.</p> <p>4) 회의(안 제6조)</p> <p>가)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나) 회의 공개원칙, 공의 등 사유로 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 비공개 가능</p> <p>5) 의견청취(안 제7조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 관계공무원, 이해관계인, 전문가등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·발언</p> <p>6) 간사(안 제8조) 규제 개혁 주무부서의 과장(조직제도담당관)</p> <p>7) 수당(안 제9조)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 지급</p> <p>다. 참고사항 (1) 관계법규 :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제3조(적용범위) ①~②(생략) ③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·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,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, 기존 규제의 정비, 규제 심사 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(2)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</p> <p>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동수) ○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이 '98년 3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조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규제시책을 심의·조정하고 규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은</p>	<p>있으나 필요하다고 보여지며</p> <p>○ 그 기능은 기존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·시행과 심사, 규제의 신설·강화의 심사, 규제의 등록·공표 및 의견수렴 및 처리, 규제 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·평가 등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시장원리를 효율적으로 도모하여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.</p> <p>○ 그러나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보다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단일 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악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</p> <p>○ 부득이 실무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을 시는 구성(위원수, 위촉대상 등) 및 기능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</p> <p>○ 아울러 본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으로 볼 때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 시의원을 포함토록 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.</p> <p>4. 질의·답변 : 생략</p> <p>5. 수정안의 요지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년 10월 20일, 장하운의원 외 1인 나. 수정이유 ○ 실무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를 명확히 하며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 시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위원수를 늘려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.</p> <p>다. 수정 주요골자 가) 위원회 구성(안 제3조) 1) 위원수 : 위원장 2인 포함 15인 이내 ※ 원안의 위원수 - 12인 이내 2) 위원 :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서울시 3급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 나) 실무위원회(안 제5조) 1) 구성 :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 위원장이 위촉하고,</p>
---	---

16 (第109回-第4次)

<p>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.</p> <p>2) 기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·조정 등에 관한 사항 ○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·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 ○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<p>6. 심사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정안 의결(재적 의원 12명, 출석 의원 7명 전원 일치) <p>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 재정운영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90</td>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98. 10. 기획경제위원회</p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8년 10월 2일, 서울특별시장</p> <p>나. 회부일자 1998년 10월 2일</p> <p>다. 상정일자 제10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(1998년 10월 20일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 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담당)</p> <p>가. 제안이유 우리市 재정운영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예산편성조례 등 4개 조례를 통합 규정하고 기금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재정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,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.</p> <p>나. 주요골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예산편성의 기본방향(안 제4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가) 예산의 정책기능 적극수행 (나) 시민 편익에 중점을 둔 재원배분 (다) 지역간 균형개발 적극추진 (라) 재정운영의 경영마인드 확대 (2)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8조·제9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가) 기능 :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관련사항 심의 	의안 번호	90	<p>(나) 구성 : 위원장·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5인 이내 위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위원장 : 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 ② 부위원장 : 기획예산실장 ③ 위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관계 공무원 - 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<p>(3)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10조·제11조)</p> <p>(가) 기능 : 민자유치사업 주요시책 등 심의</p> <p>(나) 구성 :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위원장 : 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 ② 부위원장 : 기획예산실장 ③ 위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관계 공무원 -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 <p>(4) 기금설치의 기본원칙(안 제20조) 행정목적의 달성을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 설치</p> <p>(5) 기금의 관리·운용(안 제21조제3항)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시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,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 가능</p> <p>(6)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횟수, 공개대상 등 규정(안 제28조 내지 제32조)</p> <p>다. 참고사항</p> <p>(1) 관계법규 : 지방자치법 제118조·동법 제133조, 지방재정법 제16조의2·동법 제30조·동법 제118조의3,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7항 ※ 관련내용 별첨</p> <p>(2)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</p> <p>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동수)</p>
의안 번호	90		